

유관·소방관계자교육 : 5개반 9회 (합숙·비합숙)

과정별	구분	기수	교육기간	교육형태	기당인원	교육횟수	교육인원	교육일정	
								사이버	집합
유관·소방관계자(5)	계					9	550		
	①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관리자반	7기	1일	비합숙	50	1	50		10.22
	②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실무자반	13기	2일	비합숙	100	1	100		09.14~09.15
	③ 의용소방대 직무교육반	39~42	2일	비합숙	60	4	240		07.01~07.02 07.08~07.09 07.15~07.16 07.22~07.23
	④ 의용소방대 전문교육반(대장)	12기	1일	비합숙	100	1	100		05.21
	⑤ 의무소방원 보수교육반	16~17	3일	합숙	30	2	60		03.18~03.20 11.18~11.20

4 소방관계자

4-1.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관리자반

■ 과정개요

변경 사항	전년과 동일				
교육 목표	○ 긴급구조기관 종사자 법정교육 등 재난대응 핵심역량 강화 ○ 국가재난관리체계·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개념 이해				
교육 대상	○ 지방소방경 ~ 령 소방공무원 중 긴급구조 담당 관리관 및 예정자 ※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별표5에 따라 소방령 이상 교육 가능 ○ 5급이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리자 직급 임직원				
교육 인원	○ 교육횟수 : 1회(집합 / 비합숙) ○ 기당인원 : 50명 ○ 연인원 : 50명 *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				
교육 기간	○ 기 간 : 1일 ○ 일 정 : (7기) 2020. 10. 22.				
교과 운영	구 분	계	소양분야	직무분야	행정·기타
	시 간	7	-	6	1
	비율(%)	100	-	85.7	14.3

■ 교과편성

구분	교 과 목	시 간				비 고
		계	강 의	참 여	기 타	
총계		7	6		1	
소양 분야	소 계					
직무 분야	소 계	6	6			
	국가재난관리체계와 재난발생사례	2	2			
	재난현장 안전관리	1	1			
	재난관리기관의 임무와 역할 (안전한국훈련 사례를 중심으로)	2	2			
	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	1	1			
행정 기타	소 계	1			1	
	입교 안내	1			1	

※ 위 교육과정은 교육계획 또는 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과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.

4-2.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실무자반

■ 과정개요

변경 사항	전년과 동일				
교육 목표	○ 긴급구조기관 종사자(실무자) 법정교육 등 재난대응 핵심역량 강화 ○ 최근 이슈 재난발생 사례와 대응요령, 재난발생 시 관련기관 간 협업				
교육 대상	○ 지방소방경 이하 긴급구조담당 공무원 및 예정자 ○ 6급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실무자				
교육 인원	○ 교육횟수 : 1회(집합 / 비합숙) ○ 기당인원 : 100명 ○ 연인원 : 100명 *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				
교육 기간	○ 기 간 : 2일 ○ 일 정 : (13기) 2020. 9. 14. ~ 9. 15.				
교과 운영	구 분	계	소양분야	직무분야	행정·기타
	시 간	14	2	11	1
	비율(%)	100	14.3	78.5	7.2

■ 교과편성

구분	교 과 목	시 간				비 고
		계	강 의	참 여	기 타	
총계		14	13		1	
소양 분야	소 계	2	2			
	인문학	2	2			
직무 분야	소 계	11	11			
	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	2	2			
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	1	1			
	재난관리 실무(매뉴얼·훈련)	2	2			
	긴급구조평가·자원관리	2	2			
	한반도 지진과 향후 재난발생 전망	2	2			
	긴급구조유관기관 간 소통	2	2			
행정 기타	소 계	1			1	
	입교 안내	1			1	

※ 위 교육과정은 교육계획 또는 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과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.

《의용소방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》

제18조(교육 및 훈련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

가. 의용소방대 제도

나.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

다. 위험물 및 전기·가스 안전관리

라.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

가. 수난(水難) 구조

나. 산악 구조

다.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

라.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《의무소방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》

□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

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시간 및 방법(제12조제2항 관련)

구분	내용	주기	시간	방법
1. 소방실무 교육훈련	가. 화재진압 절차 및 방법 나. 인명 구조 및 대피 다. 응급처치 방법	복무기간 중 1회 (군사교육 종료 후)	4주	강의 및 실습
2. 보건안전 교육훈련	가. 재난현장의 보건안전 위협요소 및 위생 관리 요령 나.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장비 점검 및 유지·관리 다. 현장 유형별 위험예측 라.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심리조절 교육 마.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바.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사. 그 밖에 보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	매년	40시간 이상	강의 및 실습
3. 정훈교육	가. 국가관 및 안보의식 함양 나.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 다. 인성 및 윤리교육 라. 인권교육	매월	1시간 이상	강의